論 文

장애유형별 사립대학복지시설에 관한 고찰
-명지대학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Welfare Facilities in Private Universities by Disability Types
-An Analysis of MyongJi University -

이 명 주*
Lee, Myoung-Ju

Abstract

Private universities are going through difficulties in improving facilities for the disabled students due to financial reasons. Extension elevators, grips on both sides of the hallways for the visually disabled, handrails on the walls of ramps and stairs in the existing building, and improvement of the dormitory chambers are some items of such facilities in this analysis of MyongJi University. Hence, financial support based on the long-term plans and evaluations from the National Treasury to private universities with financial stringencies, will be a critical promotion in appropriating educational budgets and executing corresponding funds. This will eventually bring equal development of educational welfare for the disabled students among national,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키워드 :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 장애학생, 장애유형, 명지대학교
Key words : Financial support in educational welfare for the disabled students in private universities, Disabled students, Types of disabilities, MyongJi University

1. 서론

장애학생들과 같은 소수에 대한 무관심이 계속되는 한 이들의 학습권은 위태로울 것이다. 그들에게는 육체적 장애로 인한 고통보다는 장애를 극복할 수 없게 건축된 환경을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이 바라보아야 하는 그 자체가 더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어린 아이가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본적인 편의 시설과 테크닉을 동시에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노력으로

* 정회원,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과 전임강사

말미암아 장애아동에게는 안위와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아동을 돌봐야할 부모에게는 일반인들이 누리는 동일한 복지를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1] 교육 및 연구 시설은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고등교육을 받고자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야 말로 단순히 소수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무장애 캠퍼스로 장애학생은 물론 비장애학생, 더 나아가 교수들에게도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까지 한국의 교육시설이 누구의 무관심 때문에 열악한가를 따지기 전에, 향후 우리 모두의 장애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일이야 말로 미래지향적인 사고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3년 대학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평가가 있기까지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1997년 4월 10일[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법률 제1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되고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들은 학교 측의 무관심 속에서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이런 대학 내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질적 수준은 장애학생 특별전형의 양적 발전에 비하면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런 불균형 상태를 극복하고자 교육부는 2002년 4월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열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확정하여 그해 4월 23일 발표하였다. 이 계획안은 복지, 교육, 고용, 정보화 그리고 이동편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와 학습지원 인력 교재개발 등 5년 동안 7백억 원을 투입하여 대학 쪽에 특별전형 문호를 넓히도록 유도하여 그 실적을 재정지원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3] 이런 맥락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8월 대학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및 평가를 위한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평가'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국 대부분의 대학은 장애학생에 대한 특례입학제도 실시여부와 상관없이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차 보고서 평가와 2차 현지방문평가를 통해 4년제 대학의 실태를 평가하고, 2004년 1월4일 언론매체에 전체 75%(139개교)가 장애학생의 이동권이나 접근권, 학습지원 등을 보장하지 않아 낙제점(65점미만)에 해당하는 개선요망'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46개 국 공립대학은 최우수'(90점 이상)나 우수'(80점 이상) 등급을 받은 대학이 하나도 없다고 발표하였다.[4]

186개 대학의 16개 대학 즉 8.6%만이 우수대학 평가를 받았다는 결과에 다시 한 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무관심인가? 아니면 개선 불가능한 요구인가? 이번 평가항목 중에는 사립대학이 단기간에 개선 할 수 없는 항목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대학이나, 실시한다 하더라도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 1급 장애인이 재학하고 있지 않는 대학이 전체 대학의 몇 %를 차지했는가도 함께 발표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모든 대학을 비인간적으로 치부하기 전에, 장애학생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대학들의 의견도 함께 공론화 되었으면 좋았다. 평가 후에는 합리적인 대책 안을 정부와 대학이

1) Gerhard Loeschcke, Wohnumwelt behinderter Kinder, Verlag das Beispiel, p.11,1993

2)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재활 복지대학과 함께 2002년 9월부터 4개월간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는 4년제 국□공립, 사립대 43개교를 대상으로 장애인 특별전형 실행이후 학내 지원체계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장애학생은 학습기자재, 편의시설, 교재불충분, 수화통역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해 수강거부나 차별, 휴학 또는 자퇴하여 1995년 이후 2002년까지 4년제와 2년제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 2천629명 중 졸업생은 1천63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논설위원(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 2002.7.30

4)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2003년 2월 4일)

상호 공유했다면 향후 지속적인 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3년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평가 기준 중에서 시설 및 설비영역 평가항목으로 제시한 내용과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이 요구하는 시설에 대한 차이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2003년도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시설·설비 영역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수도권 지역 사립대학인 명지대학교를 중심으로 재학 중인 47명 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을 분류하고 그들의 장애유형별 증상에 따른 시설부분 개선 및 요구사항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장애학생이 캠퍼스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고찰하여 새로운 평가항목을 제시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명지대학교 대학장애학생 교육복지 자체평가 시설·설비영역을 직접 총괄했던 경험과 문헌자료 그리고 평가기준을 토대로 제작한 설문지 배포 및 인터뷰를 통한 결과물 분석을 통해 요구사항을 장애유형별로 분리하여 재정리하였다.

2. 본론

2.1 명지대학교의 장애학생 입학 현황

1994년 정부는 교육법 시행령과 대학학생정원령을 개정하여 장애학생 고등교육 기회확대를 위해 '95학년도부터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여 장애학생 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95학년도 4년제 대학 6개교 106명에서 02학년도 46개교 420명으로 장애학생 입학허용 대학교와 입학자 수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장애학생 고등교육 기회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대학간의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5] 55주년을 맞이하는 명지대학교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1996년도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라는 명칭으로 장애학생 선발을 시작하였으며, 2003학년도에는 21명의 장애학생을 선발하였다. 장애학생 특별전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등 4개 장애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 입학생대비 특별전형 장애학생의 학내구성비는 2001년 0.19%, 2002년 0.19%, 2003년 0.66%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4년 8월 현재 장애학생의 학내구성비는 총 재학생 12,693명 중 47명으로 0.35%에 해당한다. 이 중 지체장애학생은 24명, 시각장애학생는 6명, 청각장애학생은 15명, 언어장애학생은 2명이다. 다음 표1에서는 명지대학교 장애학생 47명을 장애유형과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표기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03년 7월의 장애등급기준에 따르면 지체장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장애로 나눌 수 있다. 명지대학교 재학 중인 지체장애학생 24명은 4급에서 6급까지의 장애등급을 갖고 있다. <표 1 참조> 4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지체장애학생들은 휠체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학생임을 <표 2> 지체장애의 등급별 증상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1. 명지대학교 장애유형에 따른 분류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4등급 (12명)	1등급 (2명)	4등급 (8명)	3등급 (1)
5등급 (6명)	2등급 (2명)	5등급 (2명)	4등급 (1)
6등급 (6명)	4등급 (2명)	6등급 (5명)	
24명	6명	15명	2명

표 2. 명지대학교 지체장애의 등급별 증상

지체장애	지체기능장애
4등급 (12명)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등급 (6명)	-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세 손가락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등급 (6명)	-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사람 - 한 손의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4명	

5)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평가위원회, 2003년도 대학교육복지 지원실태조사 및 평가를 위한 대학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평가 편람, 2003, p.7

표 3. 명지대학교 시각장애의 등급별 장애

지체장애	시각 장애인
1등급(1명)	-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같다)이 0.02이하인 사람
2등급(2명)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등급(1명)	-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이하로 남은 사람
4등급(2명)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6명	

표 4. 명지대학교 청각장애의 등급별 장애

지체장애	청각 장애인
4등급(8명)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등급(2명)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40cm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등급(5명)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 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사람
15명	

시각 장애인인 경우, 1등급부터 4등급 판정을 받은 6명의 시각장애학생이 현재 재학 중이다<표 3 참조> 자연캠퍼스 바둑학과에 재학 중인 시각 1등급 장애인의 경우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등급은 학교 캠퍼스 내의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청각 장애는 명지대학교에서 지체 장애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장애유형이다. 청각장애는 청력이 손실된 사람과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3급에서 5급으로 나눌 수 있다. 3급은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며, 제4급은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표 5. 명지대학교 언어장애의 등급별 장애

지체장애	언어 장애인
3등급(1명)	-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4등급(1명)	- 음성촵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명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이다. 제5급은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 운동이 어려운 사람이다. 이 경우는 캠퍼스 곳곳에 쉴 수 있는 곳이나 언제든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청력만 손실된 사람인 경우는 캠퍼스에서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일반인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명지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인은 모두 청력이 손실된 청각장애학생이다.

언어장애인인 경우도 청력만 상실한 장애인들처럼 시설물 이용하는데 특별한 시설을 요구하지 않는다.

명지대학교는 단기적'으로는 캠퍼스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재학 중인 지체장애학생과 시각장애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를 통해 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청각장애학생이나 언어장애학생을 위해서는 시설·설비 영역의 개선 이전에 교수·학습 영역에서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향후 중장기 발전 계획안'에서는 무장애 캠퍼스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모든 교사동과 외부시설이 지체 1급과 시각1급 학생까지도 배려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부 지원과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2 2003년 대학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평가 (시설-설비' 영역)

2003년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평가편람'에는 션발', 교수-학습' 그리고 시설-설비'로 3개의 영

표 6. 교육복지지원실태조사 평가표

영 역	부 문	항목수
1.선발 (4%)	1.1 특별전형(4%)	2
2.교수-학습 (31%)	2.1 학습권 보장 장기발전계획(4%)	2
	2.2 교수-학습 지원체제 및 운영(7%)	7
	2.3 교수-학습기재 구비 및 활용(6%)	5
	2.4 학습지원(8%)	8
	2.5 평가지원(2%)	2
	2.6 장학지원(1%)	1
	2.7 생활 및 진로지도(2%)	3
	2.8 특성화(1%)	1
3.시설-설비 (65%)	3.1 매개시설(13%)	7
	3.2 내부시설(18%)	8
	3.3 위생시설(10%)	3
	3.4 안내 및 기타시설(8%)	4
	3.5 강의실(5%)	1
	3.6 도서관(5%)	1
	3.7 강당(1%)	1
	3.8 식당(2%)	2
	3.9 체육관(1%)	1
	3.10 기숙사 및 침실(2%)	2

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교수-학습'에 비해 시설-설비'에 대한 비율이 높은 <표 6 참조> 이유는 시설·설비' 영역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대학재정 투자가 어려워 정부지원이 크게 요청되며, 초기 투자에 의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시설·설비 지원에 더 큰 가중치를 배분하였다고 대학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평가 편람에 기재되어있다.[6]

교육복지지원평가 편람에 기재된 시설-설비'영역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매개시설'은 보행로와 주차장에 관련된 장애인 편의시설, 내부시설'은 교사[7]내의 수직 수평이동, 위생시설'은 장애인전용화장실설치, 세정장치 및 보조손잡이설치, 안내 및 기타시설'은 전화 및 정보통신 시설 설치 및 교사로의 유도와 안내 표시 그리고 음료대 설치이며, 강의실'은 진출입, 내부이동, 시야확보, 가청시설 확보, 도서관'은 장애학생을 위한 서가배치 및 지정석 확보, 강당'은 장애인 지정석 확보 및 가청시설 설치, 식당'은 배식대 높이와 지정석 확보 그리고 접근성, 체육관'은 출입에 대한 용이성과 샤워시설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숙사 및 침실'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객실 및 출입구, 화장실, 샤워 및 욕실 확보여부를 다루고 있다.

2.3 장애유형에 따른 시설·설비 영역 재평가

이 논문에서는 장애유형을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순으로 나누었으며, 세부시설로는 교통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 및 기타시설, 강의실, 강당과 체육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숙사로 구분하였다.

교통시설은 2003년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평가위원회가 제시한 자체평가항목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명지대학교가 수도권이면서 경사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설문조사에서는 교통시설을 포함하였다.

1) 시각장애

명지대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학생에게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평가에 기초한 설문지를 배포하고 결과물 도출을 위해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평가항목과는 다른 부분에서 대학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가) 교통시설

100%의 학생들이 대중교통버스, 스쿨버스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며 통학하고 있다. 자연캠퍼스의 시각장애 1등급을 가진 장애학생은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통학과 캠퍼스 생활을 하고 있다. 시각장애 2등급부터 4등급까지 판정을 받은 학생 66%는 버스승강장의 시설부분에 대한 불편보다는 버스노선번호 내지는 노선이름의 크기가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나) 매개시설

명지대학교 보행자 도로는 틈새가 없이 평탄하게 마감되어있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보통이다가 50%, 그렇지 않다가 50%로 답하였다. 경사가 유독 심한 곳으로는 자연캠퍼스의 경우 교문에서 민주광장까지, 인문캠퍼스의 경우도 교문에서 학생회관까지라는 의견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6)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평가위원회, 2003년도 대학교육복지 지원실태조사 및 평가를 위한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 지원평가 편람, 2003, p.2

7) 대학설립 및 운영규정의 제4조제1항에 관련하여 교사시설은 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부대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그림 1. 연석경사로와 점자블럭

이런 경사지에 설치된 보도를 걸을 때 휴식할 수 있는 참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약간 불편할 뿐이지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대답이 83%로 나타났다.

최소 1.2m의 보도를 지날 때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불편함이 없다는 대답이 66%, 가로수가 보행에 방해된다고 대답한 학생이 44%였다. 66% 중 22%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캠퍼스 내의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려움이 없다는 대답이 83%였다.

인문캠퍼스에 비해 규모가 큰 자연캠퍼스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시각1등급 학생인 경우는 교통이 번잡한 곳에 음성처리 신호등이 없어 불편하다고 대답하였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질문에서 83%의 학생은 운전면허증 취득 자체가 어려우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시각1등급 학생은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자가용으로 통학을 하고 있으며 전용주차구역이 모든 교사 앞에 있어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다) 내부시설

교사시설로의 출입구에 대한 질문에서 경사로부재,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의 협소, 출입문의 손잡이 높이와 모양에 따른 불편함은 전혀 없었다는 대답이 100%였다. 그러나 그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평가항목에 없는 기타 항목이었다. 첫째는 반투명 유리로 제작된 출입문 설치를 요구한 의견이 83%이였으며, 둘째는 출입구 앞에 설치된 계단 끝에 논슬립이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83%였다.

교사 내 복도에 관한 질문에서 평가항목[8]에 대해서는 전혀 불편함이 못 느낀다는 의견이 100%였으나, 오히려 기타 난에 평가항목에 없는 불편함을 기재하였다. 첫째는 복도 바닥색이 너무 어두워 사람과 물체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이 63%였다. 둘째는 강의실 문에 부착된 번호가 너무 작아 강의실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83%였다. 셋째는 시각장애 1등급을 가진 학생인 경우, 복도 바닥에 유도표시가 없어 강의실과 화장실 찾기가 힘들다는 지적을 하였다.

교사시설 내에서의 수직이동에 관한 질문에서 83%의 학생이 수직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승강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캐빈이 작고 느려서 활동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83%,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학생이 17%로 나타났다. 평가항목에는 없지만[9] 시각장애학생들이 승강기에서 느끼는 불편으로는 첫째 조작반의 숫자에 점자가 있긴 하지만, 점자를 읽지 못하므로 오히려 서로 다른 색상과 재질로 숫자가 표현되길 원했

8) 2003년 대학장애학생교육 복지지원평가기준의 시설·설비 영역의 평가항목3.2.4 청각 장애는 명지대학교에서 지체 장애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장애유형이다. 청각장애는 청력이 손실된 사람과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사시설 복도의 유효폭, 턱 낮추기, 단차해소는 적정하며 시각장애인의 유도에 장애는 없는가?
a. 복도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m 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b. 복도의 바닥 면에는 3cm 이상의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c. 시각장애인이 복도의 벽면을 따라 보행하기에 부적절한 벽면 돌출 또는 충돌위험이 있는 설치물은 제거되어야 한다.

9)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등은 유효한 바닥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가?
a. 승강기 및 리프트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b.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인가?
c.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5cm 내외로 설치한다.
d. 승강기 및 리프트는 작동되고 있는가?

다. 둘째, 83%의 학생은 숫자가 보이지 않아 원하는 층에서 내리지 못했던 불편함을 지적하면서 캐빈 내에 음성정보 설치를 요구하였다.

평가항목에 기재된 경사로에 관한 질문에서는 83%이상이 경사로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평가항목에는 없지만 시각장애인들이 경사로와 계단에서 느끼는 불편으로 경사로 또는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계단참 부분에 구배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색조, 재질 또는 조명 등의 변화를 요구했다. 층에 대한 안내표시는 명지대학교의 경우 큰 숫자가 계단참에 새겨져 있어 특별히 다른 안내표시가 필요 없다고 83%의 학생이 대답하였으나, 시각장애 1등급인 학생은 핸드레일에 점자안내스티커가 없어 정보를 읽기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이 항목 또한 평가항목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교사시설 내의 계단에 관한 질문에서는 경사로에 대한 질문의 결과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계단의 시작과 끝부분에 색조, 재질 또는 조명 등의 변화가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100%였다. 인문캠퍼스의 경우, 83%의 학생은 몇 개의 교사에는 계단에 논슬립이 없어 계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림 2. 자연캠퍼스 명진당

라) 위생시설

위생시설에 관한 질문에서는 83%의 학생이 불편함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시각장애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인 경우는 복도에서부터 장애인 화장실이 아닌 일반좌변기가 설치된 단위공간까지의 유도선 부착을 요구하였다. 즉, 시각 장애등급이 높은 학생들일 수록 장애인화장실의 큰 공간은 오히려 사용상에 어려움이 초래하므로 유도선을 설치할 때 일반단위공간으로 유도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 안내 및 기타시설

안내 및 정보통신시설에 관한 질문에서는 교내에서 공중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가 100%였으며, 인터넷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장애인 전용석은 있으나 일반 컴퓨터 책상[그림 4]이 아닌 모니터 슬림형 책상[그림 3]에 모니터가 매립되어 있어 모니터 상의 글을 읽는데 매우 불편하다는 학생이 83%였다. 컴퓨터실에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장애인 전용석을 설치할 경우, 가급적 일반 컴퓨터 책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교사시설까지의 유도 및 안내표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83%의 학생이 학기 초에는 학교 시설물의 위치나 강의실을 찾을 때 힘들지만 한 번 알고 나면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83%의 학생들이 교사 내에 안내 표지판이 너무 높은 곳에 부착되어있어 읽기에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시각장애 1등급 학생은 오히려 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 큰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림 3. 모니터슬림형책상　　그림 4. 컴퓨터 책상

바) 강의실

강의실에 관한 질문에서는 100%의 학생이 어디에 앉든 잘 보이지 않으므로 굳이 장애인 전용석이 필요 없다고 대답 하였으며, 2004년 1학기부터 대부분의 강의실에 마이크 시설이 되어있어 어디에 앉든 강의를 듣기에 어려움이 없다는 학생은 그 중 83%였다.

사) 도서관

도서관에 관한 질문에서는 서가에 붙어있는 글씨가 작아 읽기가 어렵다는 내용 이외에 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이 83%였다.

아) 강당과 체육관

강당과 체육관에 대한 질문에 83%학생이 미리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자리에 앉고 있어 불편한 점이 없다고 하였다. 시각1등급 학생은 혼자 그 곳에 가 본 적이 없어서 불편한 점을 못 느꼈다고 대답하였다.

특히 식당 및 휴게 시설에서는 메뉴판의 글씨가 너무 작아 읽기 어렵다고 83%학생이 대답하였다. 이 부분도 평가항목에는 빠져있다.

자) 기숙사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이 없어 설문 결과가 없음

2) 지체장애

지체장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장애로 나눌 수 있다.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부터 손가락을 잃은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까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지체장애학생들에게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평가에 기초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교통시설

명지대학교 92%의 지체장애 학생은 스쿨버스 또는 대중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캠퍼스 내의 스쿨버스 승강장 또는 캠퍼스 앞의 버스 정류장에서의 불편한 점으로는 등급이 낮을수록 승·하차시 버스 승강구와 바닥간의 수직적 단차에 대한 불편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지체장애 5등급과 6등급을 소지한 학생 92%이상의 학생들이 승강장과 정류장에 벤치 부재를 불편한 사항으로 대답하였다.[10]

나) 매개시설

명지대학교 보행자 도로가 틈새가 없이 평탄하게 마감되어있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그렇다가 33%, 보통이다가 50%, 그렇지 않다가 17%로 답하였다. 경사지가 유독 심한 곳으로는 자연캠퍼스의 경우 교문에서 민주광장까지를 지적하였으며 인문캠퍼스의 경우도 교문에서 학생회관까지라는 의견이 91% 이상을 차지했다.

이런 경사지에 설치된 보도를 걸을 때 휴식할 수 있는 참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약간 불편할 뿐이지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대답이 100%로 나타났다. 경사지에 위치한 대학은 2003년 대학장애학생교육 복지지원평가기준 의 시설·설비 영역의 평가항목 3.1.3 항목[11]을 단기간에 개선하기에 무리가 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경사지를 혼자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지형이라면 이 항목은 개선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선한다고 해도 사용빈도가 극히 적을 수 있다. 이 부분은 권장사항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최소1.2m의 보도를 지날 때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라는 질문에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는 대답이 100%였으나, 지체등급 4등급 학생들 중에서도 50%는 가로수 때문에 가끔 걸린다고 대답하였고 나머지 50%는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캠퍼스 내의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려움이 없다는 대답이 91%였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질문에서 지체장애학생의 50%가 자가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

10) 설문지 중에 교통시설에 대한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캠퍼스 내 스쿨버스 또는 버스 정류장에서 느낀 불편한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정류소에의 유도를 위한 유도바닥재 부재
b. 구별 불가능한 승강대 색상
c. 장애자용 안내판 부재
d. 승·하차 시 버스승강구와 바닥간의 수직적 단차
e. 안전지대 부재
f. 벤치의 부재
g. 우천시를 대비한 차양시설 부재
h. 기타
I. 불편하지 않다

11) 평가항목 3.1.3 보도 및 접근로의 유효폭과 기울기는 편의증진법'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가?
a.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이 1.2m 이상 확보
b. 휠체어 사용자가 교행 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m X1.5m 이상의 교행구역설치
c.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마다 1.5m X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 설치
d, 보도 등의 진행 방향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까지 완화

나타났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첫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개수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상습적 주차로 인해 주차가 힘들다는 점이었다. 현재 명지대학교는 법적 장애인주차구역개수를 100% 만족하고 있지만, 교양동과 전공동의 장애인 주차구역 수가 동일하게 배정되어있어 교양동의 주차구역이 실제로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교양동 앞에 장애인주차구역개수 증설은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 내부시설

교사시설의 출입구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은 전체 지체장애 학생들 중에 83%가 대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왁스칠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워 힘들다고 17%의 학생이 대답하였다. 복도를 지날 때 어려움이 있었는가의 질문에 83%학생이 불편한 점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교사시설 안에서의 수직운동에 관한 질문에서 34%의 학생이 승강기의 부재와 승강기운행중지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66%의 학생은 전혀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다.

교사 내에 설치된 경사로와 계단에 관한 질문에서 5등급 이상의 장애학생들은 불편함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4등급의 판정을 받은 학생 50%의 학생 중 25%는 경사로의 기울기가 급하여 가끔 멈춰서 쉬곤 한다고 답하였고, 나머지는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라) 위생시설

위생시설에 관한 질문에서 현재 명지대학교 장애학생들은 증세가 경미하여 각각의 교사동 1층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비장애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명지대학교 전 교사동의 1층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은 시각장애학생들과 지체장애학생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관계로 비장애학생들이 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

그림 5. 제3공학관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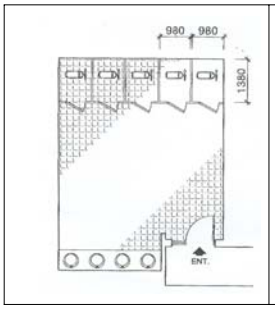

그림 6. 체육관화장실-b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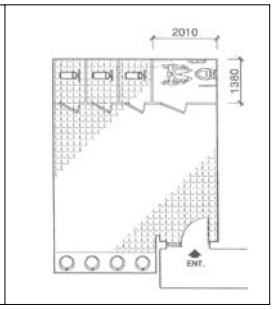

그림 7. 체육관화장실-after

마) 안내 및 기타시설

안내 및 기타시설에 대한 질문에서 92%의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명지대학교의 경우, 장애학생들이 시설물 안내 및 도움요청을 교사동에 상근하는 수위에게 받을 수 있도록 수위실 정면에 장애인 전용 Information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 및 부착하고 있다[그림 9].

그림 8. 장애인 전용석

그림 9. 수위실-인포메이션센터

바) 강의실

83%의 학생이 강의실의 통로가 좁아 이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17%의 학생이 강의실 내에 장애인 전용석이 없어 충분한 시야확보가 힘들다고 대답하였다.

사) 도서관, 강당, 체육관

도서관, 강당 그리고 체육관에 대한 질문에 92%의 학생이 불편함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 전용석은 강당의 복잡한 공간에서 비장애학생들에게도 가끔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림 10. 강당-장애인지정석

아) 기숙사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이 없어 설문 결과가 없음

3)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명지대학교 장애대상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으나, 이 영역은 추후 별도의 연구가 요구된다. 언어장애의 경우는 언어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으므로 청력을 소실한 청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시설부분에서는 비장애학생들과 동일하게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4 장애학생 장애유형에 따른 요구시설

명지대학교 장애학생 장애유형에 따른 요구시설은 다음 <표 7>과 <표 8>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는 대학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평가 기준에 없는 항목이므로 앞으로의 평가기준에 새롭게 추가 및 보완되어야 한다.

두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2003년도 대학 교육복지 지원 실태조사 및 평가를 위한 시설·설비 영역 평가 기준에서는 시각장애를 위한 평가항목이 많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은 지체장애 중에서도 휠체어

표 7. 명지대학교 시각장애학생들의 요구사항

	시각장애
교통시설	버스 노선명 또는 번호크기 확대*
매개시설	보행로의 방해물 제거- 가로수 횡단보도에 음성신호등설치*
내부시설	반투명 주출입문 설치* 출입구 앞 계단에 논슬립 설치* 복도 바닥 색상 밝게 처리* 강의실 번호 확대* 복도바닥에 유도선 설치* 조작반의 숫자를 서로 다른 색상으로 구분* 승강기 내에 음성정보시스템 설치* 경사로 또는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에 구배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색조, 재질 또는 조명 등의 변화* 핸드레일에 점자 스티커 부착* 몇 개의 교사동 계단실에 논슬립 부착*
위생시설	화장실까지의 유도선 *
안내 및 기타시설	모니터 슬림형 책상이 아닌 일반 컴퓨터 책상 구입* 교사 내 안내표지판을 눈높이에 부착
강 의 실	잘 들리는 곳에 장애인 전용석 지정
도 서 관	서가에 부착된 글씨 확대
강 당	불편함 없음
체 육 관	불편함 없음
기 숙 사	설문 결과 없음

표 8. 명지대학교 지체장애학생들의 요구사항

	지체장애
교통시설	버스승강구와 바닥간의 수직적 단차 해소* 벤치 설치*
매개시설	보행로의 방해물 제거- 가로수 교양동 앞에 장애인 주차구역 증대*
내부시설	바닥의 미끄럼 방지 승강기 부재와 승강기 운행 정지로 인한 불편
위생시설	불편함 없음
안내 및 기타시설	불편함 없음
강 의 실	강의실 통로 확대 장애인 전용석 배치
도 서 관	불편함 없음
강 당	불편함 없음
체 육 관	불편함 없음
기 숙 사	설문결과 없음

를 이용하는 장애학생을 기준으로 편중된 항목을 제시하여, 경미한 증상을 갖고 있는 지체장애학생들은 개선한 시설물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지 않음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2005학년도 수시2학기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통해 20명 이상의 장애학생이

명지대학교에 입학하게 될 것을 감안하면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장애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연석경사로, 점자블록, 보차분리, 장애인화장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문 앞 진입경사로, 안내 및 유도표지판, 강의실 배정, 강당 내의 휠체어 전용지정석, 그리고 정보·통신 시설 및 음료대 설치 등은 이번 평가에서 기대하는 정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았으나, 승강기가 없는 건물에 부가적으로 외부 돌출형 승강기 설치는 별도로 하더라도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표 7>과 <표 8>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이 부분에 추가되어야 한다.

3. 결론

1994년 교육법 시행령과 대학학생정원령'을 개정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는 열악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과 편의시설'을 대학 내에 제대로 구축하기 이전에 대학특별전형이 시기적으로 먼저 발표되고 실행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1997년 법률 제정이후, 소수 장애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건축 및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대학이 부담하여 개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문 인력과 전문세미나개설 부족으로 인해 기존 캠퍼스와 건물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혹감으로 대학 당국의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장애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평가항목이 너무 휠체어 이용자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맞춰 단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별도 평가항목으로 지정하여 전국의 대학을 평가했었더라면 2003년도 결과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2003년 평가가 단지 유명무실한 평가가 아닌 무장애캠퍼스 조성을 위한 평가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가의 장기적인 관심과 계획 그리고 그에 적합한 예산책정이 우선되어야한다.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 사립대학교 또한 국고지원금에 대한 대응자금을 별도의 교비예산에서 책정하여 시설·설비영역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사립대학교 쌍방간의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만 장애학생들은 대학 내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평가위원회, 2003년도 대학교육복지 지원실태조사 및 평가를 위한 대학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평가 편람, 2003
2. 논설위원(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 2002.7.30
3. 명지대학교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 자체평가연구위원회, 자체평가연구보고서, 2003년 11월 10일
4. 명지대학교 대학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자체평가연구위원회, 명지대학교 2003년도 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 향후계획서, 2003년 12월10
5.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997년 4월 10일
6. Gerhard Loeschcke, Wohnumwelt behinderter Kinder, Verlag das Beispiel, p.11,1993